

## 목포시 고시 제2017 - 147호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 및 승객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 및 승객의 준수사항(안)

2017년 8월 22일  
목 포 시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시어선업을 신고한 자, 선원, 낙시어선 및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영업시간)** ① 낙시어선의 영업시간은 해 뜨기 전 30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로 한다.

②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안전운항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운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도 해양경찰서장이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운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영업구역의 제한)**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다음의 구역에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해사안전법, 원자력진흥법, 항만법, 개항질서법 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
2.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시설

**제5조(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준수사항)** ①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낚시어선의 안전 및 안전용품을 점검하여야 한다.
2. 구명조끼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내의 적절한 위치에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3.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구명장비 사용법을 알려주고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승객에 대하여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4. 낚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할 때에는 승객과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의 상황발생시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 조치하여야 한다.
5. 승객이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에 인명대피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6.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객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7.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8.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무인도, 갯바위 또는 간출암에 승객을 안내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해 입항 시 하선한 승객을 모두 신고 입항하여야 한다.

②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쓰레기는 낚시어선 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2. 낚시도구나 미끼를 버리거나 버리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포획금지 수산동물의 종류, 체장(체중) 및 포획 금지기간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승객을 승선시킬 경우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기상상황 변동 등으로 회항시 환불문제 등을 알린 후 운항하여야 한다.

**제6조(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① 승객은 승선할 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에 승선할 때는 안전운항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낚시어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구명조끼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3.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선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4. 영업시간 외 항해, 영업구역 외 지역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5. 인명구조 장비나 그 밖에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는 행위
6. 분노, 미끼, 낚시도구, 쓰레기 등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
7.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포획금지 수산동물의 종류, 체장(체중) 및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③ 기상악화 등으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대피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 응하여야 한다.

④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라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목포시 고시 제2002-61호(2002.07.29) 및 목포시 고시 제2006-48호(2006.07.07), 목포시 고시 제2013-152(2013.10.14)호, 목포시 고시

제 2015-182(2015.09.04)호는 폐지한다.